

지정기간

여수시 2025. 8. 28.~2027. 8. 27.
광양시 2026. 2. 13.~2027. 2. 12.

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제도

2026. 8.



고 용 노 동 부 여 수 지 청

개 요

구분	지원사업	지원대상	지원내용	해당기관
사업주 지원	고용유지 지원금	▶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	▶ 지원수준 확대	여수 광양고용센터
	지역고용 촉진지원금	▶ 지정 지역으로 이전·신설·증설 한 사업주	▶ 채용자 인건비 지원	여수 광양고용센터
	사업주 훈련지원	▶ 직업훈련 실시 사업주	▶ 직업훈련 지원수준 확대	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
전직 지원 (근로자)	국민내일 배움카드	▶ 직업훈련이 필요한 재직자, 실업자	▶ 지원한도 상향 (자부담률 인하)	여수 광양고용센터
	국민취업 지원제도 (Ⅱ유형)	▶ 취업을 희망하는 저소득구직자 취약계층 등	▶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소득요건 완화	여수 광양고용센터
생계 안정 (근로자)	직업훈련 생계비대부	▶ 비정규직·근로자, 실업자, 무급 휴직자, 자영업자	▶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인상	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
	생활안정 자금융자	▶ 저소득 근로자	▶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 인상	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
	체불근로자 생계비용자	▶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	▶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 인상	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

1. 고용유지지원금

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시 지원금을 지급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

○ 지원대상(지원요건)

①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

- 기준달(고용유지조치 직전달)의 매출액이 직전 6개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15%이상 감소
-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6개월 중 3개월씩의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
- 해당 업종,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 **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*** 기준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의 사업주(매출액 요건 미적용)

* 「지역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」 제8조에 따른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**으로 지정된 경우

** (지정기간) 여주시 '25.5.1.~'27.4.30.(2년), 광양시 '25.11.20.~'27.11.19.(2년)

②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

- (계획서 제출) 역월에 따른 1개월 단위로 계획신고서를 실시일 전일까지 매월 신고
- (근로자대표와의 협의)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 협의

③ 고용유지조치의 실시

- (휴업)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20%이상 단축

④ 계속고용 의무 준수

-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까지 전체 피보험자에 대해 고용조정 제한 의무 시행

※ 참고(지원제외)

- ▶ 고용보험 취득기간이 90일 이하인 자, 일용근로자, 고용조정이 예고된 자,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·비속인 자, 등기이사 등
- ▶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 채용자 및 퇴직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 회사 취업한 경우 등

○ 지원내용(지원수준 확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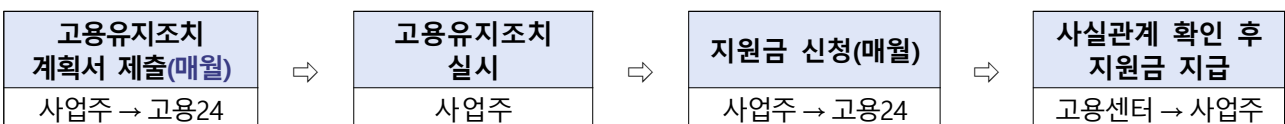
★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휴업수당의 8/10(대기업 6/10) 지원(1일 한도 68,100원)

<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(일반)>

- ▶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/3(대기업 1/2) 지원(1일 한도 68,100원)

* 연간 최대 180일 한도

○ 지원절차



○ 문의처

- 국번없이 ☎ 1350
- 여수고용복지+센터 ☎ 061-650-0178
- 광양고용복지+센터 ☎ 061-798-1921

2. 지역고용촉진지원금

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고용위기선제대응 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여 경영부담 완화

○ 지원대상(사업주 요건)

- 고용위기(선제대응)지역 지정기간에 해당 지역으로 사업 이전, 신설 또는 증설*하는 사업주
 - * 신설: 사업장 최초설립, 폐업(소멸) 후 업종 전환하여 사업개시
 - * 증설: 기계장비 확충, 사무실 추가 임차 등 생산활동 관련 1,000만원 이상 물적투자
- **(계획신고)** 이전·신설·증설 완료(조업 시작) 이전에 제출(근로자 고용계획 포함, 변경시 변경신고)
- **(조업시작신고)** 계획신고일로부터 6개월 내 이전·신설·증설되어 조업시작, **1개월내 시작신고**
 - * 조업시작일: '사업장 가동일' 또는 '근로자 채용일'
- **(제외업종)** 주점업, 부동산업,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, 공공행정,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, 가구 내 고용활동, 청소년유해업소, 계절적·한시적사업, 고용여부가 불분명한 사업, 다른 법령 및 예산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

○ 지원대상(근로자 요건)

- 해당 지역에 3월 이상 거주(주민등록 전입 등재)한 구직자를 신규채용
-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6개월 이상 실제 고용(정규직, 계약직 무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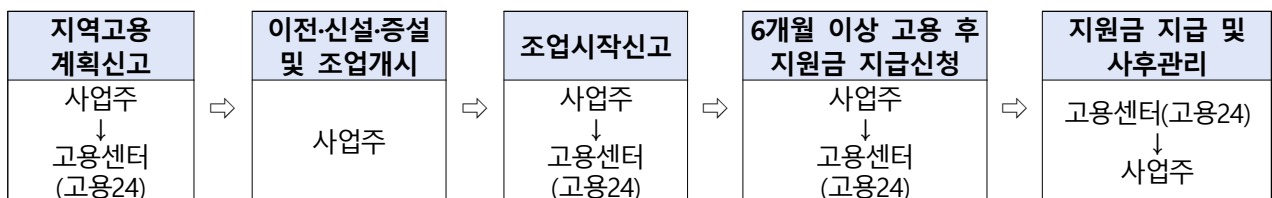
○ 지원내용

- **(지원금액)** 신규채용자 **통상임금의 1/2**(대규모기업은 1/3)을 **1일 68,100원 한도**로 지원
 - *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인원은 30%만 지원
- **(지원기간)** **최초 조업시작일로부터 1년**(개인별 1년이 아님)
 - * 최초 6개월분 신청(중도퇴사시 부지급), 이후 분기별 신청(중도퇴사시 일할계산)

※ 유의사항(지원제외)

- ▶ 조업시작 전 3개월~조업시작 후 1년, 모든 근로자 중 1명이라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
- ▶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, F-2,F-5,F-6 외의 외국인, 임금체불,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
- ▶ 해당 피보험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같거나(동일사업주 재고용), 관련성이 있는 사업주인 경우(관련사업주 고용) 지원제외

○ 지원절차



○ 문의처

- 국번없이 ☎ 1350
- 여수고용복지+센터 ☎ 061-650-0157
- 광양고용복지+센터 ☎ 061-798-1921

3.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

사업주가 근로자, 채용예정자,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인적자원개발 및 기업 경쟁력 제고

○ 지원대상

-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자체 또는 위탁으로 소속 재직자(퇴직예정자 포함)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*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업주

* 4시간 이상 집체 훈련

- 「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고시」 지정 기간 중 시작하는 훈련 과정에 한해 적용함

○ 지원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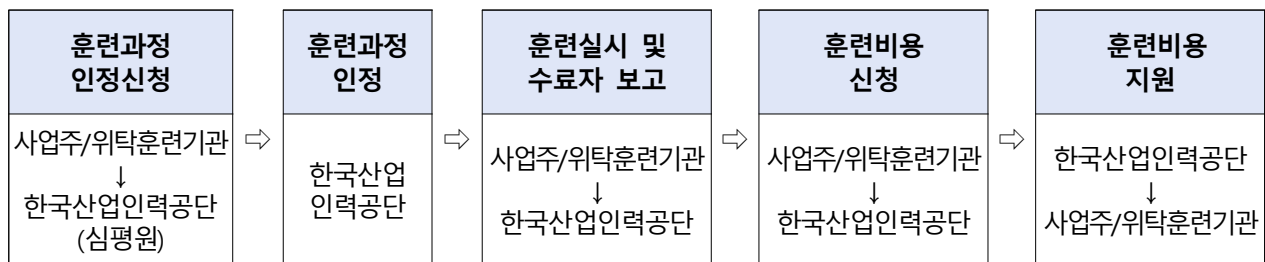
★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「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」 제27조에 따른 지원수준 상향

사업주 규모	지원율	
	일반	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
우선지원 대상기업	자체훈련 100%, 위탁훈련 90%	훈련비용의 130%
1,000인 미만 기업	60%	훈련비용의 80%
1,000인 이상 기업	40%	훈련비용의 70%

※ 연간 지원 한도액: 고용보험료 납입금의 240% (500만원 미만인 경우 500만원 지원)

○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

- 오프라인(방문·우편·팩스) 또는 온라인(HRD-Net)으로 훈련신청
- 훈련비용 지원신청서와 훈련비용 증빙서류(훈련비 계산서 등)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훈련비용지원2부로 제출



※ 과정인정, 실시신고, 변경신고, 수료보고 등 훈련 운영 관련 승인 ☞ 서울지역본부

○ 문의처

- 한국산업인력공단 콜센터 ☎ 1644-8000
-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☎ 02-2137-0592~7

4. 국민내일배움카드

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

○ 지원대상

- (재직자)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내 사업장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자 또는 해당 지역에 주소(카드 수령지)를 두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
- (실업자) ①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실업자(신청시점 기준 3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), ②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실직한 자(여수 `25.5.28.~`27.8.27., 광양 `25.11.13.~`27.2.12.)
- (자영업자)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서 신청시점 기준 1년 이상(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 기준) 사업하고 있는 자영업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
 - *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사업자로서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(수입금액)이 4억원 미만인 경우
 - * 다른 사업장에 근로자로 취업하기를 희망하거나 업종을 전환하여 창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

○ 지원내용

- ★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일반 대상자에게도 우대지원대상과 동일한 혜택 부여
→ 본인부담률 0~20%로 인하, 계좌 한도 상향(300만원→500만원)

<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내용(일반)>

- ▶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게 월 11.6~31.6만원 지급
(단위기간 1개월 출석률 80% 이상 시)
*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미지급
- ▶ 지원금액 : 5년간 최대 300만원, 본인 부담률 15~55%
- ▶ 우대지원대상(저소득층 및 특정 대상) : 본인 부담률 0~ 20% , 계좌 한도추가 200만원

○ 이용방법

- (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)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(www.work24.go.kr) 신청 가능
 - *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: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⇨ 고용센터 담당자 유선상담 실시
 - *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: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⇨ 필요한 경우 진단·상담 진행

○ 참고사항

-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한도 추가지원은 추가지원 신청일 기준으로,
훈련비 지원 비율은 훈련과정 시작일 기준으로 지정기간 내인 경우 적용
- 훈련과정은 고용24(www.work24.go.kr) 검색

○ 문의처

- 국번없이 ☎ 1350
- 여수고용복지+센터 ☎ 061-650-0171
- 광양고용복지+센터 ☎ 061-798-1904

5. 국민취업지원제도

취업을 희망하는 저소득구직자,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,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

○ 지원대상

-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 내 취업지원 신청자 중 지역 소재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(여수) '25. 5. 28., (광양) '25. 11. 13. 이후 이직한 이력이 있고 현재 실업 상태인 자(타지역 거주자 포함)

※ 취업지원 신청 시 취업취약계층(고용위기지역 등 지정에 따른 실직자)임을 체크

○ 지원내용

구분	유형	세부 지원내용
취업지원	공통	○ (취업활동계획)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역량에 따른 취업활동 계획 수립 ○ (취업지원서비스)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·일경험·복지 프로그램 등* 제공 * (취업지원) 직업훈련, 일경험, 복지프로그램(생계, 의료, 금융, 돌봄서비스 등) 연계 (구직활동지원) 취업서류·면접 컨설팅, 일자리정보 제공, 구인·구직 만남의 날, 취업알선 등
소득지원	I 유형	○ (구직촉진수당)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60~100만원*, 6개월 지원 * 기본 60만원 및 부양가족(만 18세 이하, 70세 이상, 중증장애인) 1인당 10만원씩 추가
	II 유형	○ (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) 취업활동계획 수립시 15~25만원(1회) 지원 ○ (참여장려수당) 고용센터 방문하여 집중 취업상담·알선참여시 1회 2만원(5회) 지원
	공통	○ (취업성공수당) 6개월 근속시 50만원, 12개월 근속시 100만원 지원* * I·II유형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, 특정계층(소득무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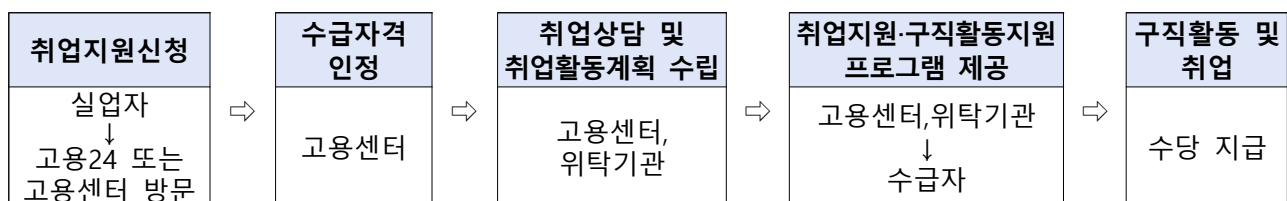
<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특정계층으로 참여>

▶ 특정계층 : 15~69세 **취업취약계층***은 소득 및 재산 무관

* 취약계층: 기초연금수급자, 여성가장, 결혼이민자, **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실업자** 등

☞ 원칙상 **중장년(35~69세)**의 경우 중위소득 100% 이하만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에 참여 가능하나,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경우 소득수준과 무관, "**특정계층**"으로 참여 가능

○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



○ 문의처

- 국번없이 ☎ 1350
- 여수고용복지+센터 ☎ 061-650-0174
- 광양고용복지+센터 ☎ 061-798-1904, 1906

6.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

실업자, 비정규직, 무급휴직자,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장기간 직업훈련에 따른 생계 부담을 대부지원

○ 지원대상

- 전년도 20세 이상 가구원 합산 연간소득금액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% 이하이고,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 중이며, 대부 대상월의 훈련일수가 15일 이상인 자로
- ①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내 주소를 두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, 실업자(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자), 무급휴직자, 피보험자인 자영업자 중 소득요건 만족하는 자
- ②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사업장에서 근로하다,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일 이전 3개월에 해당하는 날 이후 이직하여 실업상태인 사람(타지역 거주자 포함)
- ✓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제외
- ✓ K-디지털트레이닝훈련·중장년내일센터 프로그램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% 이하, 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훈련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20% 이하로 적용
- ✓ 2026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%

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
2,051,390원	3,359,434원	4,287,229원	5,195,791원	6,045,375원	6,844,762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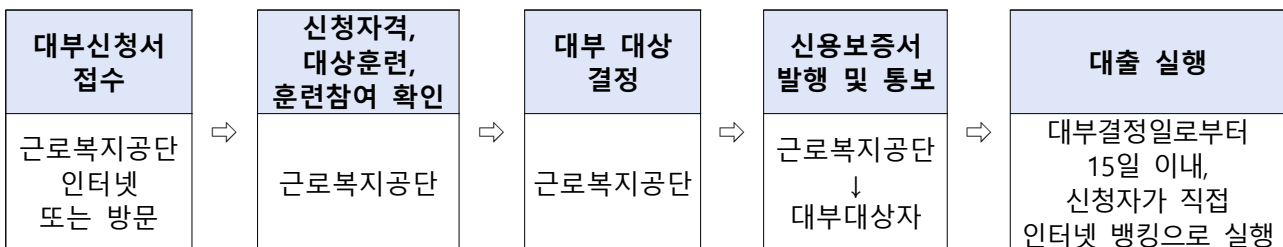
○ 지원내용

★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대부한도 1인당 월 최대 200만원(총 대부한도 2,000만원)으로 확대

<직업훈련 생계비 대부(일반)>

- ▶ 대부한도 : 월 50만원~200만원, 1인당 총 1천만원 한도
- ▶ 이율: 연리 1%(신용보증료 별도)
- ▶ 상환조건: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,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,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중 선택

○ 신청방법 및 절차



○ 문의처

-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☎ 1588-0075
-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 ☎ 061-680-0151(여수·광양지역 관할)

7.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

저소득 근로자의 혼례·장례·양육 등 필요한 생활자금을 저리로 용자하여 생활 안정에 기여

○ 지원대상

-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사업장의 재직 근로자(거주지 무관)로서 아래 요건 **모두 충족**
-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이면서 ② 4인 가구 월 평균 중위소득의 1/2 이하(26년 325만원)인 자
- ※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(소액생계비의 경우 180일)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이력이 있어야 하며, 소득요건은 미적용

○ 지원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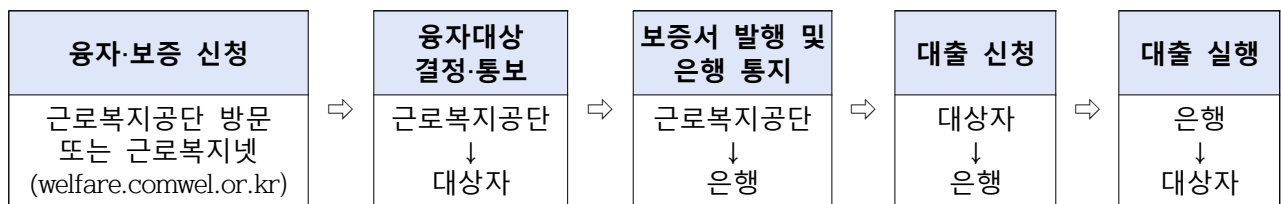
★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2종류 이상 용자 신청시 최대 3,000만원 한도

구분	의료비, 장례비	혼례비	노부모부양비	자녀양육비	소액생계비	합산 용자한도
용자 한도	1,000만원 (실제비용)	1,250만원	2,000만원 *65세이상 (조)부모 1인당 500만원	2,000만원 *18세 미만 자녀 1인당 500만원	200만원	최대 2,000만원 *선제대응3,000만원

○ 용자 조건

- (금리 및 상환) 연1.5%,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
- (신용보증) 용자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공단이 신용보증지원(신용보증료 연 0.9% 별도 부담)

○ 신청방법 및 절차



○ 신청제한

- 이미 용자한도액까지 용자를 받은 사람,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를 받아 용자금이 회수 결정된 사람, 공단의 신용 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및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,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, 대위변제, 부도, 금융질서문란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, 의료비의 경우 근로자 본인 및 가족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이 50만원 미만인 사람,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였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사람, 마약·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에 중독된 사람, 장례비의 경우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사람, 외국인 및 재외동포(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를 말함)는 지원제외

○ 문의처

-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☎ 1588-0075
-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 ☎ 061-680-0154(여수·광양지역 관할)

8. 체불 근로자 생계비 용자

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용자하여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

○ 지원대상

- (사업장 소재지)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사업장의 임금체불 근로자(거주지 무관)
 - * 폐업된 경우는 제외
 - *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30일 이상 고용보험 이력이 있어야 함
- (체불요건)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 체불
 - * 건설일용근로자는 전년도 건설업임금실태조사(개별직종노임단가)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 단가 5일분에 해당하는 금액('26년 855,185원) 이상 체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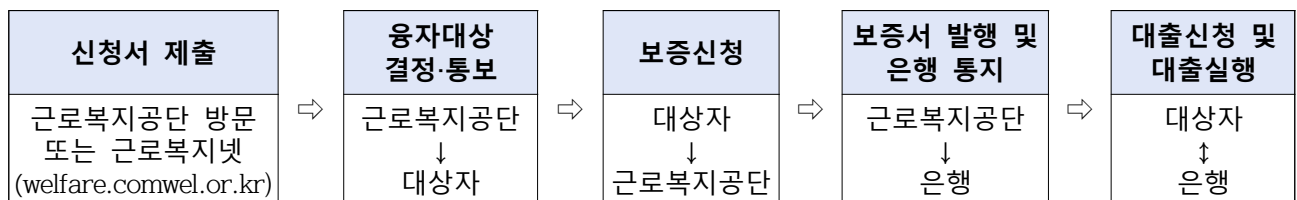
○ 지원내용

★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용자한도 최대 1,500만원으로 확대

<체불 근로자 생계비 용자(일반)>

- ▶ (재직자) 체불임금 범위 내 신청
- ▶ (퇴직자) 최종 3개월간 임금(휴업수당, 출산전후휴가급여 등),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 등 체불임금
- ▶ (용자한도) 최대 1,000만원
- ▶ (이자율) 연 1.5% (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 지원에 따른 신용보증료 1% 별도)

○ 신청방법 및 절차



○ 신청제한

- 이미 용자한도액까지 용자를 받은 사람
-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를 받아 용자금이 회수 결정된 사람, 공단의 신용 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,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
-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, 대위변제, 부도, 금융질서문란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
- 외국인 및 재외동포(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를 말함)

○ 문의처

-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☎ 1588-0075
-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 ☎ 061-680-0150(여수·광양지역 관할)